

질의 사항 및 답변

2021년 12월 01일부로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중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중 공통편을 포함하여 1장 교량편에서부터 15장 공동구편까지 공통적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상태평가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으로는

1. 추락방지시설
2. 도로포장
3. 도로부 신축이음부
4. 환기구 등의 덮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사항1

• 예를 들어 6장 건축물편의 경우 3. 도로포장, 4. 도로부 신축이음부 등은 일반적인 건축물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토목분야의 점검 항목으로 판단되는데, 6장 건축물편에도 포함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질의사항1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 답변 =>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는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으로서 각 장별로 구분 없이 1장 교량편에서부터 15장 공동구편까지 공통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질의사항2

질의사항1과 같이 1장 교량편에서부터 15장 공동구편까지 공통적으로 기입한게 맞다면, 점검 수행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이 되나요?

질의사항2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 답변 =>

• 각 장에 명기된 상태평가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수행하면 됩니다. 질의사항1에서 예시로 든 6장 건축물편으로 보면, 3. 도로포장, 4. 도로부 신축이음부 등은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에는 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기술자 의견을 명기하면 됩니다. 다만 6장 건축물편에서도 특수한 경우(조선소, 제철소 등 건축부지 내에 도로, 신축이음부 등이 있을 경우)에는 3. 도로포장, 4. 도로부 신축이음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른 장에서도 동일하게, 각 부분별로 해당하는 부위는 점검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은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자 의견을 명기하면 됩니다.

질의사항3

일반적으로 도면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해당하는 부위의 도로포장, 도로부신축이음부등을 평가하면 되지만, 도면이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나요? 인터넷에서 지적도 등을 참고하여 점검을 수행하면 되나요?

질의사항3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 답변 =>

•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에 명기된 사항에 따라 참고하여 점검을 수행하면 됩니다. 다만,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하신대로 지적도 등을 참고하여 점검을 수행한 후 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질의사항4

상태평가 수행은 어떻게 진행하며, 상태평가 프로그램상에는 어떤식으로 명기를 하나요?

질의사항4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 답변 =>

• 현 시점에서는 상태평가 프로그램상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대한 점수 반영은 따로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언급했던대로 각 장에 명기된 상태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기술자 의견과 함께 보고서에 명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질의사항5

추락방지시설과 환기구 등의 덮개 상태평가 기준 중 a등급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손상 및 결함 등이 없는 최상의 상태』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규격에 맞게라는 말은 기준 도면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도면이 없는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면 되나요?

질의사항5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 답변 =>

•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규격 등을 비교 검토하고, 손상 및 결함 등을 확인한 후 a등급으로 등급을 산정하면 되나,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b등급~e등급까지 기술자의 판단하에 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에 따라

1.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2.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伸縮) 이음부의 파손
3.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위의 결함이 발견 될 경우 지체없이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질의사항6

추락방지시설은 내,외부 난간대, 점검로 등을 의미하는 듯하며,
환기구 등의 덮개는 말 그대로 환기구 덮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해당 내용이 맞나요?

질의사항6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 답변 =>

- 추락방지시설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곳에서 설치된 내,외부 난간대, 점검로를 포함하여 일반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지나다니는 통행로의 난간대 등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 환기구 등의 덮개는 시설물의 출입구 등에 있는 환기구의 덮개, 맨홀 등 추락 및 낙상의 위험이 있는 곳의 덮개 일체를 의미합니다.